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57 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한민수・이기헌・임오경

이연희 • 박홍배 • 황 희

박균택 • 정일영 • 박해철

홍기원 · 윤종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을 점거하거나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

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법률제20392호 제6조의4 신설 등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하고,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4(주차단위구획의 무단 점거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) ① 누구 든지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누구든지 주차장의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무단 점거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를 "제1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한다.

- ②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2. 제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	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
일부개정법률안	일부개정법률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4(주차단위구획의 무단
	점거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)
	① 누구든지 주차단위구획을
	무단으로 점거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	② 누구든지 주차장의 통행로
	를 가로 막는 등 주차장 이용
	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
	<u>아니 된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무단 점거 및
	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방
	해 행위의 종류 및 기준 등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제6조의4</u> (생 략)	<u>제6조의5</u> (현행 제6조의4와 같음)
제30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3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	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	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
	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u>4</u>

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<u>2.</u> ∼ <u>4.</u> (생 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
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
<u>거한 자</u>
<u>3.</u> ~ <u>5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4
호까지와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